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for Wedding, Funeral, Ancestor Worship, and 60th Birthday Anniversary

국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이윤금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Kookmin University

Lecturer : Yoon Geum L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household expenditures on wedding, funeral, ancestor worship, and 60th birthday anniversary.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1996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money spent on family ceremony expenditures.

The household income, age of head, education of head, and family size were all significant factors for understanding family ceremony expenditure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additional income from wife'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associated with lesser expenditures on family ceremony, while business income, asset income, and transfer income had no effects on this category. The effect of the third quarter of 1996 was significant on family ceremony expenditures, indicating that households spent significantly less for this category in the summer than did in the winter,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I. 문제의 제기

옛부터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인륜지대사라 하여 무리를 해서라도 호화스러운 의식을 치르어 왔던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의식문화였고, 오늘날에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서 호화스러운 의식을 치르고 싶어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이 발표한 가정의례 비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전국의 혼례비용이 연간 12조2천1백73억 원에 이르며, 예물 신혼살림마련 등 혼수비용과 약 혼식 함값 결혼식 피로연 폐백 신혼여행비 등으로 이뤄지는 혼례비용은 평균 3천6백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동아일보, 1998, 3). 한편 장례 및 묘지관련 비용을 포함한 연간 장묘비용의 규모는 1

조5천1백99억원으로 장례 건당 평균비용은 6백10만원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경조사비의 비율이 높아 가계압박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일보, 1998, 3).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의례생활(儀禮生活)은 우리 나라 문화의 중요한 영역이다. 가정의례에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의 전통예절문화나 생활양식,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과다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허황된 소비생활이 습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가정의례는 형식과 절차, 허례허식과 자기과시로 포장되어 본래의 가정의례의 의미를 잃고 왜곡되고 혼돈된 상태로 변질되었다. 혼인과 장례, 제례, 돌, 회갑연 등 가정의례와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의 빈약한 가정형편에 비하여 분수를 넘는 과다한 지출은 개인적으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촉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례 절차나 규모면에서 허례허식이 없고, 엄숙하고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식개혁을 통하여 가정의례와 관련된 과소비적, 과시적, 동조적 소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새롭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의례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치관 및 행례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나 혼례, 상례, 제례 등에 대한 태도, 의식 및 행동을 위주로 조사되었고(홍현주, 1986; 한경순, 1986; 김명나, 1989; 이정우, 김명나, 1993; 조남훈 외, 1993), 최근 도시가계 가정의례비용에 대한 수치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공하였을 뿐(이필도 외, 1998), 가정의례비에 대한 지출을 가계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이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어떠한 가계의 특성이 가정의례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문화를 이룩하고, 가정생활의 향상을 피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의례에 대한 제관점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례(家庭儀禮)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례(家禮)라고 한 것을 풀이해서 말한 것이고 가정의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9년 정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 가정의례와 관련하여 행해야 할 바를 규정하고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식(儀式)을 치르는 예절이고 의식은 정해진 격식과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사이다. 의례란 일상생활과 달리 일정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특별한 의상을 입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의례에는 세시의례(歲時儀禮)가 있고 통과의례(通迺儀禮)가 있는데, 세시의례란 일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행하는 명절날의 의례를 말하고, 통과의례란 출생, 결혼, 사망과 같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말한다(이광규, 1997). 통과의례란 말은 사회인류학 용어로 Van Gennep가 명명한 것으로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출산의례(出產儀禮), 成年式(성년식), 결혼식(結婚式), 장례식(葬禮式)이 여기에 포함된다(이차숙, 1997).

통과의례를 우리 나라에서는 관혼상제(冠婚喪祭)라 불려왔으며 이것을 네 가지 예라 하여 사례(四禮)-관례, 혼례, 상례, 그리고 제례-라 하였고, 집에서 행하여지는 의례라 하여 家禮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관혼상제가 본래의 의미의 四禮와 내용상 다른 점은, 통과의례의 출생의례가 四禮에는 없고 사례에 있는 제례(祭禮)는 통과의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차숙, 1997). 이에 대하여 이광규(1997)는 우리 나라 전통가족이 생산과 소비단위만이 아니라 교화의 단위였기

때문에 가족원을 교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 시절 버릇들이기와 가정교육이지만 교화의 구체적인 행위로 관혼상제를 장려하였고,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과례인 관혼상제에는 출생의례가 없고 통과례에 속할 수 없는 제례가 첨가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혼상제의 의미가 오늘날에 이르러는 성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옛날의 관례(冠禮)가 빠지고 새로이 회갑연(回甲宴)이 포함되어, 가정의례라는 용어에는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1969년 1월 정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시행하면서부터 사용되어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정의례를 살펴보면, 朱子가 쓴 家禮가 고려말에 전래된 이래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지도이념으로 표방함으로써 더욱 본격화되어 관혼상제의 전거가 되었다. 주자의 가례는 조선시대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禮로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명분과 존경을 행함과 동시에 冠婚喪祭의 의식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천적인 가정의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이길표, 최배영, 1998). 그 후 영조때 도암 이재(1844)가 주자의 가례를 본으로 하고 고금의 예서 및 선현들의 예법 예설을 상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사례편람(四禮便覽)'이 간행되어 조선후기에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의례로 널리 보급되어졌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일제 식민지 시기의 전통과의 단절기를 지나고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양문화가 유입되면서 동서양의 문물이 혼합되고 상업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례는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의식절차에 내재된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왔다. 전통적인 가정의례 절차를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본래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절차와 형식으로 개선하여 의미 있는 가정의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정의례와 관련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

홍현주(1986)는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연령이 낮은층보다는 연령이 높은층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그리고 타종교에 비해 불교신자가 제사에 대한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순(1986)은 혼·상·제례에 대한 남자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는데, 혼례의 節次와 儀式에있어서 도시에서는 젊은층이 농촌에서는 장년층에서 근대화된 의식의 정도가 높았다. 상례의 儀式節次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근대화된 의식 정도가 높았고, 제례의식에 있어서는 50대와 장남들이 제사의 儀式을 조상숭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유미(1990)의 연구에서 혼례·제례·회갑에 대한 의식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현저히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근대적이란 서구의 생활태도, 가치체계의 도입에 의해 변화된 태도나 의식을 보이면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례에 대한 의식은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뚜렷이 근대적이었고, 회갑에 대한 의식은 기독교 천주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근대적이었다. 또한, 혼례에 대한 행동은 기독교, 천주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례·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 모두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혼례·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서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나, 1989).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이정우와 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2명 이하인 집단에 비해 가정의례에 대해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과 다소 낮은 집단이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이었다.

김시월 외(1996)는 서울 시민의 관혼상제에 대한 인식을 관혼상제에 대한 관심도, 계승도, 필요도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44.7%가 관혼상제에 관심도를 보였고, 관혼상제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1.6%였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1.2%로 높게 나타나 서울 시민의 관혼상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례는 관심도, 필요도, 계승도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 현대생활에서 전통적인 관혼상제 중 제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상례는 관혼상제중 관심도, 필요도, 계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나 가치관의 영향으로 현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서 첫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시기인 가계는 관혼상제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도가 극히 낮지만, 첫 자녀가 대학재학중인 가계는 관혼상제에 대한 관심도 및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의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가계의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고연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계, 자녀수가 많은 가계가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우선 국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질 때, 이러한 의식개혁이 나아가 가정의례를 건전한 방향으로 실행해나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가정의례와 관련된 지출비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혼례와 상례를 중심으로

가정의례와 관련된 지출비용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서 제사, 회갑, 돌 등과 관련된 지출비용의 자료는 미약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제례나 회갑연보다는 호화혼례나 장례관련업소들의 폐해 등 장묘관행의 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혼례와 상례에 관한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혼례비용은 예단, 예물, 신혼살림 마련에 드는 혼수(婚需)에 드는 비용과 약혼식, 합값,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폐백 등 의례(儀禮)에 드는 비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 혼례비용은 1996년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혼례 한 건당 소요되는 비용(주택비용 제외)은 1960년대 후반에는 423만원, 1970

년 후반에는 1,423만원, 1990년에는 1,694만원, 1993년에는 3,065만원, 그리고 1996년에는 3,679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필도 외, 1998). 최근의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혼례비용(주택비용 포함)은 한 건당 평균 8,160만원이었고, 이와 비슷하게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에서도 혼례비용(주택비용 포함)은 한 건당 평균 7,5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혼례비용은 1인당 GNP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4.8배, 일본의 3.3배, 영국의 3.2배, 대만의 3.7배, 싱가포르의 7.3배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혼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상례(장례)는 사람이 죽어서 치루어지는 의식절차로 통과의례중 사람이 거치는 마지막 의례이다. 장묘관련 비용이란 장례관련 비용과 묘지관련 비용(화장관련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칭하는 것이고, 장례관련 비용은 다시 장의용품비, 장례식장비, 장의자동차비, 조문객접대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관련 비용의 총규모는 약 1조 5,199억원에 달하며, 이를 한 건당 장묘관련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610만원 정도이고, 장묘관련 총비용중에서 장례관련 비용은 60.6%, 그리고 묘지관련 비용은 37.4%를 차지하고 있다(이필도 외,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1990)의 조사에 따르면, 묘지관련 비용을 제외한 장례관련 비용은 203만원(1990년 기준)으로, 이중에서 수의, 관, 염습 등 장의용품 비용에 평균 74만원이 소요되었고, 조문객접대 비용에는 111만원, 장의자동차 비용에는 18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장례관련 비용중 조문객접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6년의 장례관련 비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조문객접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수의, 관, 장례식장 임대료의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다(이필도 외, 1998). 또한 이러한 장례관련 총비용은 상류층의 경우는 1건당 950만원~1,270만원대, 중류층의 경우는 430만원~500만원대, 그리고 하류층의 경우는 150만원~200만원대에서 각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사대상 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도시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정의례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자료

위의 연구문제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1996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전국의 전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다. 본 자료는 조사대상수가 62,799가구에 이르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1996년에 가정의례비지출이 있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최종 677가구를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3. 변수 및 분석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정의례비와 가정의례구성비이다. 지출규모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식인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의 가정의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가계의 월지출액에 의거한다. 가정의례구성비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연령, 가계소득, 가족원수, 교육수준, 가구유형, 주택소유여부, 분기, 다양한 소득원, 경조비 더미변수 등이 가정의례비와 가정의례구성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려되었다. 가계소득은 가계의 모든 소득원천에서 들어오는 월소득을 의미하며, 이때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지출이 증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소득을 제공시킨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 가정의례비지출과 가계소득간의 곡선적 상관성(curvilinear relationship)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유사하게 연령과 가정의례비지출간의 관계도 가정의례비지출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겠지만 어느 시기 부터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례비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연령을 제공시킨 변수도 모델에 포함시켰고, 가족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례비지출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며 연속변수의 형태로 가족원수를 포함시켰다. 이 밖에 독립변수의 질적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변수가 사용되었는데, 가구유형, 주거소유형태, 교육수준, 분기, 다양한 소득원, 경조비지출여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사분기를 통해 가정의례비지출이 계절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경조비지출가계라는 가변수를 통해 그해 경조비지출이 있는 가계와 경조비지출이 없는 가계간에 가정의례비지출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상당한 하락규모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었고(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과도한 규모의 하락초청은 타 가계에 대한 경조비지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경조비지출이 그 가정의례비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가정의례비지출과 경조비지출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소득원(배우자소득, 부업사업소득, 자산이자소득, 증여보조소득)이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간의 가정의례비지출에 차이가 있는가를 봄으로써 가구주 근로소득 외의 소득원천이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선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등을 산출하였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하위집단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가정의례비지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되는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을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분석하였고,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47.8세로 비교적 높았으며, 평균 가족원수는 3.7명이었다. 1996년에 가정의례비지출이 있었던 조사대상가계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92만원으로 이는 199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소득인 215만원 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편 이들의 월평균가정의례비지출은 133만원이었고, 총소비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은 50~59세가 34.0%로 가장 많았고, 60세이상도 17.7%나 되어 조사대상가계가 대체로 연령이 높은층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가계는 봉급근로자 21.0%, 자영업자 42.4%, 노무근로자 24.4%, 그리고 무직 12.1%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가계의 상당수가 자가 소유(70.6%)하였고, 취업인수가 3명이상인 가계도 전체의 20.7%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는 39.3%, 고졸은 37.5%, 대학이상은 23.2%였다. 가계소득은 226만원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75만원미만인 저소득층도 37.5%이었다. 가족원수에 있어서 3명이하는 48.3%였

<표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n=667)

연속 변수		평균
가구주 연령		47.8세
가족원수		3.7명
월평균 가계소득		292만원
월평균 가정의례비		133만원
월평균 가정의례비구성비		15.0%
범주형 변수	집 단	빈도(%)
가구주 연령	30세미만	61(9.1)
	30~39세	128(19.2)
	40~49세	133(19.9)
	50~59세	227(34.0)
	60세이상	118(17.7)
가구 유형	봉급근로자	140(21.0)
	자영업자	283(42.4)
	노무근로자	163(24.4)
	무직	81(12.1)
주택소유형태	자가	471(70.6)
	임대	196(29.4)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262(39.3)
	고졸	250(37.5)
	대학이상	155(23.2)
가계소득	75만원미만	250(37.5)
	75~225만원	136(20.4)
	226만원이상	281(42.1)
가족원수	3명이하	322(48.3)
	4명	186(27.9)
	5명	95(14.2)
	6명이상	64(9.5)
취업인수	1명	230(34.5)
	2명	235(35.2)
	3명이상	138(20.7)
분 기	1분기(1, 2, 3월)	119(17.8)
	2분기(4, 5, 6월)	165(24.7)
	3분기(7, 8, 9월)	174(26.1)
	4분기(10, 11, 12월)	209(31.3)

으며, 가족원수가 6명이상인 가계도 9.5%였다.

2.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2>는 가계특성에 따라 가정의례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분산분석 결과인데, 가

<표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비 규모 및 구성비

변수	지출항목	가정 의례비		가정 의례비 구성비	
		평균	Duncan's	평균	Duncan's
소득	75만원미만	1333911	A	0.171	AB
	75~225만원	821545	B	0.142	B
	226만원이상	1581119	A	0.202	A
	F-value	4.73***		4.31**	
연령	30세미만	1611413	A	0.234	A
	30~39세	1187611	AB	0.163	BC
	40~49세	861868	B	0.122	C
	50~59세	1507937	AB	0.199	AB
	60세이상	1544591	A	0.189	AB
	F-value	2.19		4.63***	
교육수준	중졸이하	1427329	A	0.207	A
	고졸	1187187	A	0.169	B
	대학이상	1411259	A	0.145	B
	F-value	0.76		5.14***	
가구유형	봉급근로자	1337739	A	0.152	A
	노무근로자	1310795	A	0.199	A
	자영업자	1338860	B	0.167	A
	무직	1395427	A	0.176	A
	F-value	0.03		1.91	
분기	Q1(1, 2, 3월)	1625486	A	0.197	A
	Q2(4, 5, 6월)	1640241	A	0.211	A
	Q3(7, 8, 9월)	393478	B	0.095	B
	Q4(10, 11, 12월)	1707964	A	0.210	A
	F-value	12.98***		14.17***	
주택 소유	자가	1471649	A	0.179	A
	임대	1001813	B	0.177	A
	F-value	5.44*		0.02	
취업인수	1명	1408317	A	0.190	A
	2명	1157748	A	0.165	A
	3명이상	1504768	A	0.188	A
	F-value	1.18		1.04	
가구원수	3명이하	1338770	C	0.196	A
	4명	894922	BC	0.133	B
	5명	1680640	AB	0.174	AB
	6명이상	2067219	A	0.228	A
	F-value	4.90**		5.38***	

* p<.05, ** p<.01, *** p<.001

정의례비와 가정의례비구성비에 있어서 가계특성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의 경우, 월 평균 가계소득이 226만원이상인 가계의 경우와 소득이 75만원미만인 가계의 경우 평균 가정의례비지출은 각각 대략 158만원과 133만원으로 나타났고, 반면 가계소득이 75~225만원인 중소득계층의 경우 가정의례비지출액이 고소득계층의 약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례비구성비에서도 고소득계층의 경우 총소비지출의 20.2%를 가정의례비에 지출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례비지출이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의례비구성비는 가구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구주의 연령이 30세미만인 경우 23.4%로 나타나 총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50~59세인 가계와 60세이상인 가계가 구성비에 있어서 각기 19.9%와 18.9%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들 가계와 가구주의 연령이 40~49세인 가계간에 가정의례비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령대가 혼례비용으로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적령기 자녀를 두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고, 60세이상인 가계의 경우는 회갑연, 칠순잔치, 자녀결혼, 손자녀 백일 및 돌잔치 등 생애주기에서 가정의례가 많을 시기이므로 그 만큼 총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가정의례비지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의례비구성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중졸미만인 고졸이나 대학이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졸미만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의 20.7%를 가정의례비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가계가 가정의례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고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의례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절적인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비지출이나 가정

의례비구성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3분기인 7월, 8월, 9월에 다른 계절에 비해 가정의례비지출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총소비지출중 차지하는 구성비도 낮게 나타나 이 기간에 가정의례비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가정의례 중에서 비용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례가 여름철에는 비교적 덜 실행하여지고,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등에 행해지는 차례도 여름철이 아니므로 3분기의 가정의례비나 가정의례비구성비 모두 다른 계절에 비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는 전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에 비해 월평균 가정의례비지출이 많은데 대략 145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수가 4인인 가계인 경우는 예외이지만, 대체로 가족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계에서 지출하는 가정의례비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구유형이나 취업인수와 같은 가계의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변수의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용된 변수들의 가정의례비지출과 가정의례비구성비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3%, 14%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계소득과 가정의례비지출간의 관계를 비선형관계인 것으로 예측하여 소득과 소득제곱을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는데 예상대로 소득과 소득제곱이 가정의례비지출과 가정의례비구성비 둘 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적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계수를 보면, 소득과 소득제곱이 각기 (-)와 (+)인 것으로 드러나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정의례비지출이 감소하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가정의례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득계층에서보다는 저소득계층에서 그리고 중소득계층에서보다는 고소득계층에서 가정의례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구주연령과 가정의례비 지출

<표 3> 가정의례비 지출규모와 가정의례비 구성비에 대한 OLS 분석결과

	가정 의례비		가정 의례비 구성비	
	Coefficient	Std. err	Coefficient	Std. err
상수	4285725	1366249	0.5905	0.1157
연속변수				
가계소득	-815319**	337987	-0.0579**	0.029
(가계소득) ²	151137***	45894	0.0115***	0.003
연령	-115436*	60235	-0.0145***	0.005
(연령) ²	1200*	648	0.0002***	0.000
가족수	125996*	70894	0.0025	0.006
범주형변수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341915	219278	-0.0413**	0.018
대졸이상	-198100	290597	-0.0701***	0.025
가구유형:(무직)				
봉급근로자	-97001	295277	-0.0204	0.025
노무근로자	-358025	312959	-0.0016	0.026
자영업자	196768	321980	0.0181	0.027
주택소유형태:(임대)				
자가소유	230490	212796	-0.0018	0.018
분기:(1, 2, 3월)				
2분기(4, 5, 6월)	148080	274232	0.0182	0.023
3분기(7, 8, 9월)	-1013125***	276140	-0.0885**	0.023
4분기(10, 11, 12월)	92431	265459	0.0095	0.022
다양한 소득원:				
배우자소득	-708711**	279981	-0.0588**	0.0237
부업/사업소득	-377350	306646	-0.0155	0.0259
자산/이자소득	35327	295766	-0.0158	0.0250
증여/보조소득	-365174	305536	0.0004	0.0259
경조비지출가계				
(경조비무지출가계)	-37661	191777	-0.0231	0.0162
R ²	0.13		0.14	
F값	5.00***		5.32***	

괄호안은 비교집단

* p<0.10, ** p<0.05, *** p<0.01

간의 관계를 보면 소득의 경우와 같이 연령과 연령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적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귀계수에 있어서 (-)와 (+)의 관계를
보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례비지출이
감소하나 연령이 일정시점에 이르면 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적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 초반인 형성

기에 해당하므로 이 시기에는 자녀의 돌잔치, 시부
모·친정부모의 회갑연 등 가정의례행사가 많으
므로 이러한 지출이 많으나 자녀가 초·중·고를 다
나는 성장기에 이르면 가정의례에 관련된 지출이
감소하다가, 다시 성숙기 및 노년기에 이를 때, 자녀
들의 혼례, 자신들의 회갑연 등으로 다시 가정의례
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정의레비구성비의 경우도 연령변수들은 유의한 비선형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3〉을 보면, 가족원수와 가정의레비지출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가족원수가 1명 더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레비지출이 12만5천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가정의레비와 관련된 행사가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가정의레비지출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핵가족에서보다 확대가족에서 가정의레비지출비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가족원수는 가정의레비구성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가정의레비지출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가정의레비구성비의 경우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졸이하의 가계에 비해 고졸가계의 가정의레비구성비는 41%정도 낮았으며, 중졸이하의 가계에 비해 대학이상가계의 가정의레비구성비는 7.0%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일수록 가정의레비행사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가구유형에 따라 가정의레비지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였으나, 무직가계에 비해 봉급근로자가계, 노무근로자가계, 자영업자가계 모두 가정의레비지출과 가정의레비구성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 가계간에 가정의레비행사와 관련된 지출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가를 소유한 가계와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가계를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간에 가정의레비지출과 가정의레비구성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레비행사는 계절과 상관성이 있으므로 분기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3분기(7월, 8월, 9월)의 경우만 가정의레비와 가정의레비구성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1분기(1, 2, 3월)에 가정의레비에 지출한 가계에 비해 3분기(7, 8, 9월)에 지출한 가계의

가정의레비는 일백만원정도 적었고, 가정의레비구성비에서도 3분기에서 1분기보다 8.8%나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분기에 가정의레(혼례, 회갑연, 장례, 제례)를 실행하는 경우에 1분기 보다 가정의레비의 지출규모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철에는 축하객의 참석이 적으므로 가정의레비의 규모를 적게 하게되고 이에 따라 지출규모도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소득원천과 가정의레비지출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다양한 소득원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배우자소득, 부업사업소득, 자산이자소득, 증여보조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표 3〉을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계의 경우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계에 비해 가정의레비지출이 71만원정도 적게 나타났고, 가정의레비구성비에서도 배우자소득이 없는 가계에 비해 5.8%정도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계의 경우, 배우자의 부가적 소득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가정의레비지출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부가적인 소득이 가정의레비행사와 같은 실질출로 소비되기 보다는 투자나 자산축적의 기반을 위한 저축으로 쓰여지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많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가정의레비지출항목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필수재구입을 위한 지출항목에 쓰여질 수 있으므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맞벌이 가계의 경우 시간적 제약 또는 시간적 압박에 따라 가정의레비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수 있고, 따라서 가정의레비행사를 간략히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두 집단간에 가정의레비 지출규모에 있어서 월평균 약 71만원정도 차이가 났고, 가정의레비구성비에 있어서도 5.8%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경조비 더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1996년에 경조비지출이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간에 그 해의 가정의레비지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6년에 타가계에 부

조로서 지출한 경조비와 그 가계의 1996년도 가정의례비 지출규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1996년도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가정의례에 대한 지출을 관혼상제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가정의례비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정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건전한 가정생활문화를 이룩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이 가정의례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총소비지출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에서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생활주기-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노년기에 따라 가정의례비 지출에 차이가 있었다. 형성기인 가구주의 연령이 30세미만에서 가정의례비지출이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총소비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시기에 23.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성장기(가구주의 연령 30~39세, 40~49세)에는 비교적 이러한 지출이 적었고, 특히 연령이 40~49세인 경우에 가정의례비 지출규모나 구성비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가 저학력인 가계일수록 가정의례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컸고, 가족원수가 늘어날수록 가정의례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가구유형에 따른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절적인 특성에 따른 가정의례비나 가정의례비구성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3분기

인 7월, 8월, 9월에 1분기인 1월, 2월, 3월 보다 가정의례비지출이 일백만원이나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례비구성비도 3분기에 1분기보다 8.9%나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계는 가구주 근로소득만 있는 가계에 비해 가정의례에 대한 지출규모가 적었고, 총소비지출 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지출을 혼례, 상례, 제사, 회갑, 돌 등과 관련된 지출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에서 가정의례비 지출규모나 구성비 모두 중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교육과 계몽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자기 분수에 맞는 가정의례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소득계층은 가정의례비에 대한 지출규모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총소비지출중 가정의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나 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치는 이들의 과소비·과소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고소득층이나 지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각성과 솔선수범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가정의례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지출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성숙기와 노년기에 한꺼번에 가지는 가정의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장기계획이 가족생활주기 초반인 형성기부터 필요하다. 즉,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가정의례에 관련된 자금을 준비한다면, 큰 부담 없이 행사를 치르면서 안정된 가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의례비지출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족원수, 배우자소득여부 등과 같은 가계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의례 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러한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나아가

국가적·제도적 차원에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계절에 따른 가정의례비지출에 차이가 있었는데, 3분기인 7월, 8월, 9월에 가정의례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혼례의 경우 봄·가을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교통혼잡이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이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여름철 혼례, 즉 비수기 혼례에 대한 다양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반제도를 위해 정부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례에 대한 각자의 합리적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남들이 하니까 계절적으로 봄·가을에 한다기 보다는 또 많은 하객을 초청하기 위해 성수기에 혼례식을 거행한다기 보다는 계절에 상관없이 가정의례의 참뜻에 의미를 더 두고 독자적이고 주체성있는 가정의례를 실행하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각계각층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구조의 개선을 우선 도모하고 이를 국민생활에 까지 널리 보급시켜 가정생활속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학력층 가계의 가정의례비지출이 비교적 적었으므로, 이들의 가정의례 수행에서의 건전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며 한편 저학력층 주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관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이 도시가계로 제한되어 농촌가계의 가정의례비지출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관혼상제 항

목에 대한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계의 가정의례비에 대한 지출실태를 파악하였으나, 하위항목인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 소항목의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소항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심층적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의례는 통과례이므로 사회경제적인 특성 외에 가치관이나 심리적 특성도 가정의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도 의식과 태도를 포함한 가치관 변수나, 심리적 변수를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가정의례비 지출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시월 외(1996). 관혼상제를 통해 본 서울 시민의 공동체 의식: 친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7권, 49-97.
- 3) 동아일보, 1998년 3월 26일.
- 4) 손유미(1990). 서울시 주부의 통과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5) 이광규(1997).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6) 이길표 최배영(1998). 朱子 '家禮'와 그에 나타난 昏禮에 대한 고찰(I). 대한가정학회지, 36(3), 77-86.
- 7)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관한 연구: 결혼식·제사 및 회갑연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생활과학연구지, 8, 23-50.
- 8) 이차숙(1997).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교문사.
- 9) 이필도 외(1998). 가정의례의 경제적 비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4(1), 147-161.

- 11) 정상진(1995). 우리 민속과 전통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12) 조남훈 외 (1993).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중앙일보, 1998년 3월 26일.
- 14) 지영숙(1997). 현대가족생활설계론. 서울:학지사.
- 15) 한경순(1986).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6)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7) 서병숙 외(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 18)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장의서비스 및 사설공원묘지 실태조사 결과.
- 19)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 20) 통계청(1997). 1996도시가계연보.